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발행일 2024. 04. 30.

금융투자소득세 Q&A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5가지 질문

- 무엇인가요?
- 왜 필요한가요?
- 개미들이 타격을 입나요?
- 주식시장 위축·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있나요?
-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폐지해야 하나요?

올해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의 갑작스런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그 후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 국면으로 마무리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재차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미투자자 및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5가지의 쟁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금융투자소득세, 무엇인가요?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 펀드, 채권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주식형 펀드의 연간 수익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해외주식 등 기타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수익이 250만원 이상일 때 부과합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② 금융투자소득세, 왜 필요한가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는 이미 ‘자본이득세’, ‘주식양도세’라는 이름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주주가 아닌 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채권과 국내 주식형 펀드 및 ETF, ELS·DLS와 같은 파생상품 양도소득 등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이자소득 등은 유형에 관계 없이 세금이 부과되는데 금융투자소득만 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습니다.

③ 금융투자소득세, 개미들이 타격을 입나요?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019년과 2021년 사이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전체의 0.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폐지 시 혜택을 보는 대상은 ‘개미’가 아닌 소수의 고소득층입니다. 참여연대에서 5천만원의 소득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추정해본 결과, 주식양도소득은 0원인 것에 반해 근로·사업소득은 601만 5천원, 이자소득은 700만원 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지 않으면 이러한 소득별 과세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④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시장 위축과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있나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가치와 투자수요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습니다. 기업투자자의 경우, 법인세를 통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큰 영향이 없습니다. 세부담을 이유로 국내 주식 대신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미 해외 주요국 대부분은 주식, 채권 등의 양도소득에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⑤ 금융투자소득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폐지해야 하나요?

우선,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주식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또, 국내 투자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해외 주식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더라도 과세여부만으로 주식가치가 판단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기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 등 구조적 문제가 지적된 만큼 특정 제도나 정책만으로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매우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Q&A

취지와 배경

22대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 국면으로 마무리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재차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하며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소액 주식투자자를 일컫는 ‘개미’와 연관지으며 ‘1400만 개미투자자의 운명’, ‘개미 학살 비판받는 금투세’, ‘개미런 부르는 금투세’, ‘금투세 시행하면 다 죽어’ 등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당, 전문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세수 감소 우려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다수 개미투자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극소수 슈퍼개미를 위한 특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미투자자 및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여론을 촉구하고자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5가지의 쟁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A 문항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개미투자자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은 없는지, △주식시장 위축 및 자본 유출 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는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필요한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Q1. 금융투자소득세, 뭔가요?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 펀드, 채권과 같은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주식형 펀드 등의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해외 투자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 이상일 때 부과**합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 도입이 추진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원래는 2023년 1월 도입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5년 1월로 한 차례 유예한데 이어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Q2. 금융투자소득세, 왜 필요한가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 또는 ‘주식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아래 표1 참고).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과 채권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각 금융투자상품별로 과세 체계를 달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례로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해도 대주주¹가 아니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채권, 국내 주식형 펀드 및 ETF, ELS·DLS와 같은 파생상품을 양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셈입니다.

¹ 코스피 상장사 지분 1%, 코스닥 상장사 지분 2%,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자로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세금이 부과됨.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조 9,423억원(연평균 9,808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²했습니다. 또한, 한 차례 유예로 2025년 시행 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4조 328억원(연평균 1조 3,443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³했습니다. 만일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면 상당한 규모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사업·이자소득 등 유형에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금융투자소득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표1] 주요국의 금융투자자산 과세 현황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양도차익	X	O	O	O (이자·배당소득 포함)	O (이자·배당소득 포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현황 및 쟁점(2020)

Q3. 금융투자소득세, 개미들이 타격을 입나요?

일각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개미’들에게 큰 손해나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매우 빈약하며 왜곡, 과장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전체의 0.9% 수준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개인투자자 1400만명 중 1% 남짓한 ‘슈퍼개미’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를 모든 ‘개미’들에게 타격을 주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었을 때, 다수의 ‘개미’가 아닌 소수의 ‘슈퍼개미’들에게 그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소득 유형별로 부과하는 세금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표2] 소득금액 5천만원에 대한 소득 유형별 산출세액과 실효세율

소득 유형	주식양도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소득금액(a)	5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기본공제금액(b)	50,000,000원	1,500,000원	1,500,000원	-
과세표준(c=a-b)	-	48,500,000원	48,500,000원	50,000,000원
세율(d)	-	15%	15%	14%
산출세액(e=c*d)	0원	6,015,000원	6,015,000원	7,000,000원
실효세율(f=e/a)	0%	12%	12%	14%

*주식양도소득은 ‘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산출.

² 국회예산정책처, 2020. 12.,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³ 국회예산정책처, 2023. 1.,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⁴ 금융투자협회 국회 제출자료, 2022. 11., 주요 5개 증권사의 최근 3년간 실현손익 금액 현황

참여연대에서 소득 유형별로 최소한의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산출세액과 실효세율을 계산한 결과, 주식양도소득 0원, 근로소득·사업소득 602만원, 이자소득 700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경비, 비용 등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각 유형별로 동일하게 연간 5천만원으로 가정한 것이며 근로소득은 1인가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세율 15%(소득세법 제55조 1항),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세율 14%(소득세법 제62조⁵)를 적용하여 산출했습니다. **소득이 동일하지만, 유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0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표2] 참고).

또 기본공제금액에서도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기본공제액은 0원, 근로·사업소득의 본인공제액은 150만원, 주식양도소득은 5천만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주식양도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이라도 단 한 톨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 양도소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이러한 과세 불균형은 더욱 심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의한 국세 수입은 감소한 반면, 총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세 수입 중 근로소득세가 17.2%로 차지했으며, 최근 10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다수 ‘개미’투자자 입장에서는 극소수 ‘슈퍼개미’가 특혜를 받는 지금의 과세체계를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달리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주식거래세는 모든 투자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22년 0.23%→‘24년 0.18%)되어 왔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에 따른 과세 불형평이 없도록 하고 모두가 동일하게 부담하던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합리적인 금융 과세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Q4.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시장 위축과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있나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의 ‘큰손’이 이탈하여 주가가 폭락하고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어 결과적으로 개미들에게도 그 부담이 전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1989년에 주식양도세를 도입한 대만의 사례를 들어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나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만은 금융실명제도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양도세 도입 발표 3개월 후 곧바로 시행되어 부작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20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으며, 2023년 시행을 앞두고 한 차례 더 유예했다는 점**에서 대만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예측가능성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갑자기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주식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가치와 투자수요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합니다. 우선, 기업투자자의 경우 이미 법인세를 통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큰 영향이 없습니다. 또, **이미 해외 주요국가들이 주식, 채권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⁵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과세하는데, 국내주식 대신 해외주식에 투자할 것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 폭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기우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손익통산,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 등은 투자 손실을 반영해주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환영할 부분입니다. 현재 주식, 펀드, 파생상품별로 각각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특정 금융상품에서 크게 손실이 발생해 최종적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또, 오랜 기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한 해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손익통산은 여러 금융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통합적으로 계산하여 과세하고,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는 그 해에 발생한 손실금액을 다음으로 이월하여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 과세체계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Q5. 금융투자소득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폐지해야 하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므로 이를 폐지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윤 대통령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또,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를 폐지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 방법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에 따르면, 오랜 기간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외에도 주주환원 정책, 회계투명성 등 구조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금융투자소득세와 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특정 제도를 폐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론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은 불평등·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개별 종목과 상품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고 있는 복잡한 과세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합의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졸속 선언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과세형평성, 손실공제 측면에서 대다수 ‘개미’들에게 이익을 주는 반면 이를 폐지하는 것은 극소수 ‘슈퍼개미’에게 특혜를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논란을 부추기지 말고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20. 12.,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 국회예산정책처, 2023. 1.,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 김준석·강소현, 2023. 2.,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이슈보고서 23-05, 자본시장연구원
- 이상엽·송은주·서동연, 2020. 12. 3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현황 및 쟁점', 세법연구 20-0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금융투자협회 국회 제출자료, 2022. 11., 주요 5개 증권사의 최근 3년간 실현손익 금액 현황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금융투자소득세 Q&A

발행일 2024. 04. 30

발행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신승근 교수)

담당 박희원 간사 02-723-5052 tax@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온라인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 채널 안내\(SNS·뉴스레터·보도자료 수신 등\)](#)